

공 시 송 달 공 고

1. 제 목 :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

2. 관계법령

가.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

나.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

다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
3. 서류의 내용

- 귀사의(귀하가 연대보증하신) 남북협력기금 대출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공시송달 대상자(체납자) 및 내역

순번	채무자명	사업자(주민)등록번호	주소지	체납액(원)*
1	고*근	6503**-*****	-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	312,300,110
2	대월통상(주)	215-87-*****	-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	77,660,760
3	유일종합무역상사 최*식	104-15-***** 6404**-*****	-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107번길 -인천광역시 남구 염창로 94	94,928,870
4	(주)동운상사 고*술	603-81-***** 4003**-*****	-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3 -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	8,345,180

* '15. 9. 7. 기준

5. 문의처 :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(☎02-3779-6644, 6620)